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기준 마련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9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제2209459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2
※ 참고자료	10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0945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28.
3. 회 부 일 : 2025.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이용자·차량의 종류 및 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가. 검토의견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약자¹⁾ 중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²⁾,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대상과 차량의 종류 및 차량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 등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법정 기준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도입이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입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도입된 교통수단으로서, 현행법령에서는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하는 대상 차량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하는 휠체어 등의 탑승설비 및 탑승설비의 구조·재질·성능 등에 관한 규격·기준 등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음⁴⁾.

현재 국내에서는 특별교통수단 규격에 맞게 생산되는 자동차는 없고,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일반 차량을 법정 특별교통수단 기준에 맞게 개조·판매하는 업체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하고 있음⁵⁾.

이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현행법에서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의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③ (생략)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 가.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 나. 이동식 간이침대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 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 나. 휠체어 고정설비
 - 다. 손잡이(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자고정장치”는 “교통약자 고정장치”로 본다.

⑥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5) 특별교통수단 예시



중증보행장애인 인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법정 대수 이상을 도입하여 운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⁶⁾.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대상 차량 및 탑승설비 기준 】

구 분	내 용	근 거
이용대상자	- <u>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u>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u>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u> (승차정원 25인 이하로 한정한다)	법 제16조제3항,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및 별표 1의3
탑승설비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u>승강설비</u> 나. <u>이동식 간이침대</u>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u>승강설비</u> 나. <u>휠체어 고정설비</u> 다. <u>손잡이</u>(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탑승설비의 규격 및 기준	- <u>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u>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준용 - <u>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및 부착장치</u> 등의 규격 및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규정	법 제16조제3항, 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6항 및 별표 1의3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② (생략)

한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은 현행법상 특별교통수단처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차량은 아니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도입·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현행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대상자, 차량 종류, 차량 설비 등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하도록 폭넓게 위임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전국에 624대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운행 중이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택시 운수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일정 대수를 지자체가 임차하여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형태로 운행하고 있고⁷⁾,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 중 시각장애인 또는 신장장애인 등과 같이 특정 대상만 이용하는 임차택시를 운행하거나 지자체에서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⁸⁾.

7)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택시)



8)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대부분 특별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와 차량을 연결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행됨.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행 현황(2023년 기준) 】

구분	임차택시			지자체 직접 운행
	일반 임차 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신장장애인 병원이송 택시	
합계	369	244	3	8
서울	76	158	-	-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90	-	-	-
울산	-	13	3	-
세종	-	3	-	8
경기	89	16	-	-
강원	21	-	-	-
충북	23	10	-	-
충남	-	9	-	-
전북	48	27	-	-
전남	16	-	-	-
경북	6	8	-	-
경남	-	-	-	-
제주	-	-	-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하여 이용대상자, 차량 종류, 장착 설비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여 법규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

용할 수 있는 차량'의 도입과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개정 목적으로 볼 때, 개정안은 휠체어 이용자와 비이용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차량의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으로 보급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개조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의 단점을 보완하고 휠체어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차량이 2025년말 출시될 예정으로⁹⁾, 곧 도입될 이 차량의 이용 및 운행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1. 참조)

그런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도입은 특별교통수단과 달리 법정 의무도입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량사무로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바, 향후 개정안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차량의 도입 형태나 도입 비용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도입이 지금보다 위축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니버설디자인 차량의 도입 의무화와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정부 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동반될 필요가 있어 보임.

9) 기아 PV5(2025. 11. 출시예정)

나. 국토교통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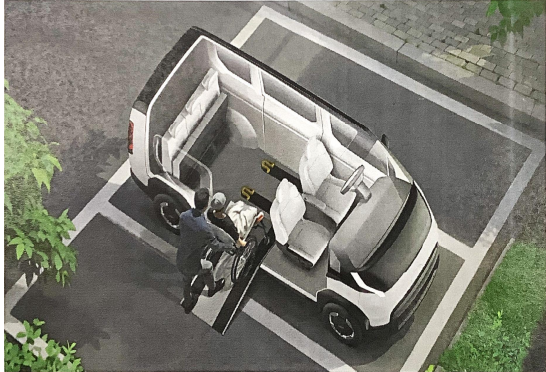
휠체어이용자와 비이용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택시 확대를 위해 탑승설비 규격 등 기준 마련에 동의함.

다만, 유니버설디자인 차량 판매 시기가 2025년말부터로 예상되므로 탑승설비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공포 후 시행일까지의 유예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며, 임차택시뿐 아니라 바우처택시에도 차량종류, 탑승설비 규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

유니버설디자인 차량 현황

Universal Design 차량 <예시 : 기아 PV5 WAV>	특별교통수단 차량 <카니발 등 개조 차량>
  <차량 탑승 위치> - 휠체어 이용자, 비장애인 모두 같은 옆문 탑승	  <차량 탑승 위치> - 휠체어 이용자는 차량 후면으로 탑승 -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탑승하여 불편
 <좌석 배열> - 휠체어 이용자 탑승 시, 시트 접은 후 탑승 - 동승자와 인접 착석 가능 - 휠체어 공간을 파내는 개조가 필요하지 않음	 <좌석 배열> - 휠체어 미탑승 시 휠체어 공간은 빈 상태로 운행 - 동승자는 앞줄 시트에 착석 - 휠체어 공간 개조 후 이 공간을 타 용도로 활용 불가(일반 좌석 등)

- 뒷문으로 탑승하는 특별교통수단과 달리 **옆문으로** 탑승(보도에서 탑승)
 - 특별교통수단보다 높은 천장으로 인해 차량바닥을 파내지 않아 **승차감이 좋으며, 차고가 낮아서** 휠체어 탑승이 **편리하고 안전**
 - 휠체어 탑승시에도 뒷좌석에 보호자 1명이 휠체어옆에 함께 앉을 수 있어, 보호자는 휠체어 앞줄에 탑승해야하는 현행보다 개선
- ※ 자료 : 국토교통부